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5.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정이유

-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조)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한다.(안 제2조)
-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안 제4조)
 - 지역사회 정신보건 진단
 - 정신장애인 발견·등록 및 입원 전문진료 의뢰
 -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보건상담·교육 및 홍보)
 - 정신장애인·가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모임지원
-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에 의함(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18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조)
-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한다.(안 제2조)
-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안 제4조)
 - 지역사회 정신보건 진단
 - 정신장애인 발견·등록 및 입원 전문진료 의뢰
 -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보건상담·교육 및 홍보)
 - 정신장애인·가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모임지원
-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비용 수납한도 액 고시"에 의함(안 제5조)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천시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한다.

②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소 인력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정의)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보건 진단
2. 정신장애인 발견·등록 및 입원 전문진료 의뢰
3. 주간 보호프로그램 운영
4. 사례 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건강 종진사업(주민대상 정신보건상담·교육 및 홍보)
6.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7. 정신장애인·가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모임지원
8.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9. 자문위원회, 전문인력 정례 모임
10. 기타 선택사업

제5조(이용료 부담)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용 입소 비용 수납한도액 고시"에 의한다.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다.

1. 부천시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
2. 타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에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조사항)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